

# 수입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유예등 건의

- 대한석유협회 -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환율급등으로 인해 국내정유사의 원유 및 석유제품 도입비용 규모가 급상승하고 막대한 환차손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외국은행들의 신용평가도 하락으로 인해 Usance 차입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국내 정유사는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정 물량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심지어 국내수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정유사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국내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유예,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소요 기일 단축 및 석유비축 의무량에 대한 부과금 면제를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현황 및 요청사항

- 현행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나프타와 나프타대체 수입석유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일이 속한 월의 익월 25일까지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으며, 부과금의 환급신청일도 월 3회(7,17,27일)로 제한되어 있음과 아울러 그 환급소요 기일도 10근무일 이내로 상당히 길며,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석유비축 의무량과 운영재고량을 동일하게 전년도 내수 판매량의 33일분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제 정유사 운영재고량인 27일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금의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재 국내 정유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환차손 및 Usance 차입규모 축소 등에 의한 자금압박 상황을 고려할 때, 수입 원유/석유제품 전량에 대해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과금 환급소요 기일도 단축시키며 석유비축 의무량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국내 정유사의 자금압박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한 국내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 건의

-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현행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건의함.
  - 현행 징수유예대상인 나프타, 나프타대체 석유제품을 원유 및 석유제품 전체로 변경하고 징수유예기한을 3개월 연장요망(현 자금위기상황이 종료될 때 까지 운용)

조항	현행	개정
제14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은 나프타와 나프타대체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에 한한다.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은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로 한다.
제15조 (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징수유예하는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징수유예 받고자 하는 석유제품의 통관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로 한다.	징수유예 받고자 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통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 (징수유예분의 환급)	징수유예된 분에 대한 부과금의 환급은 환급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의 사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후에 지급한다.	부과금 징수일 이후에 지급한다.

- 상기 고시변경에 의할 경우, 국내 정유업계 전체로 약 5,500억원의 자금창출효과가 발생하여 국내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부과금 환급제도 개선

구 분	관세환급	부과금 환급		비 고
		현 행	개 선	
환급결정일	5일 이내	10일 이내	5일 이내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7조(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개정
신청일	수시신청	월3회로 제한 (7,17,27일)	수시신청	석유개발공사의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징수 및 환급요령」 제13조(환급신청일) 개정

### (3)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개정 건의

- 또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동 고시의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현행 전년도 정유사 내수판매량의 33일분에 해당하는 정부고시 운영재고량을 실제 정유사 운영재고량 수준인 27일분으로 하향 조정하고 33일분에 해당하는 정부고시 석유비축의무량과의 차이량인 6일분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면제

조항	현행	개정
제4조 제⑤항	제4항에 의하여 고시한 물량 적용기간은 당해년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98년 1월 1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98.1.1부 시행의 경우)
<별표 1>	석유비축의무량과 운영재고량을 전년도 정유사 내수 판매량의 33일분으로 동일하게 적용	석유비축의무량은 33일분으로, 운영재고량은 27일분으로 하여 차이 6일분을 부과금면제 비축량으로 적용

- 고시개정에 따라, 부과금면제비축량에 대한 부과금 기납부금액을 고시 시행일의 납부대상금액에서 차감(정유사 전체로 약 170억원 추정)

3. 아울러, 폐업계에서 기 건의한 바 있는 유류에 대한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재차 건의드리오니, 향후 관련 세법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